

● 제283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8. 9. 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김소양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14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김소양 의원의 15명
- 나. 제안일 : 2018. 8. 7.
- 다. 회부일 : 2018. 8. 1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차량안전 사고 발생과 급식 식자재 부실 관리 적발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 영유아 승하차 시 잔여인원 여부 점검 등 어린이집 차량의 안전한 운행과 위생적인 급식 식자재 관리 등과 관련한 법규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임.
- 현행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는 제21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에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에 대한 주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포괄적·선언적 규정으로 인해 정작 보육

현장에서는 준수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에 영유아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과 급식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이와 관련한 보육교직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시장이 이들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아울러 어린이집 차량·급식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제5장 ‘아동학대 방지 등’을 ‘아동학대 방지 등 아동의 안전 확보’로 변경하여 규정의 명확성을 강화하고, 제6장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책무’를 신설하여 현행 제21조 및 제21조의 2를 포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조항 신설(안 제19조의2)
 - 시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고, 평가·인증 등에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
- 어린이집 급식관리 조항 신설(안 제19조의3)
 - 어린이집의 원장 및 교직원은 건강·영양 및 위생 등에 있어 철저한 급식관리를 하여야 함.
 - 시장은 어린이집의 급식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고, 평가·인증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급식관리에 대한 시장의 조사·점검 의무를 규정하고 그 결과를 어린이집 평가나 인증 등에 반영 조치하도록 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매우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2 주요사항 검토

□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조항 신설 (안 제19조의2 신설)

- 개정조례안은 시장에게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 및 인증 등에 반영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들의 등하원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영유아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구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¹⁾(이기숙 외, 2011: 17), 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차량안전 관리에 대한 조사·점검의무를 시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 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그 결과를 평가 및 인증 등에 반영조치하도록 하여 어린이집

1)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윤선화. 2011. 영유아 안전교육. p. 17. 경기: 양서원.

차량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려는 점 역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하지 않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중앙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서울시의 조사·점검 결과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의 관련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하겠음.

□ 어린이집 급식관리 조항 신설 (안 제19조의3 신설)

- 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에게 급식관리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영유아보육법」제33조2)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경우, 식품과 조리 과정의 위생관리가 소홀하면 식중독이 발생하기 쉽고, 이는 영유아의 성장 발달과 건강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급식관리가 반드시 요구되는 바, 원장과 보육교직원에게 급식관리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앞에서 차량안전관리 조항에 대해 검토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에게 매년 1회 급식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평가 및 인증 등에 반영조치하도록 한 것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사항으로 보여짐.

2) 「영유아보육법」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3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급식관리에 대한 시장의 조사·점검 의무를 규정하고 그 결과를 어린이집 평가나 인증 등에 반영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이미 집행부 차원에서 차량안전이나 급식안전에 대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차량이나 급식과 관련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서울시는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보육 현장의 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들의 규정준수 노력 역시 절실하다 하겠음.